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특약

2. 대상 계약

이 특약은 아래 대상 상품에 가입한 계약 중,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.

대상 상품
‘(무)알리안츠어린이이디보험’, ‘(무)알리안츠다이렉트자녀사랑보험’, ‘(무)알리안츠자녀사랑보장플랜보험’, ‘(무)올라잇어린이보험’, ‘(무)ABL인터넷어린이보험’, ‘(무)처음부터끝까지우리아이보장보험’, ‘(무)e만큼든든한어린이보험’, ‘(무)ABL소중한우리아이보험’, ‘(무)ABL우리아이THE보장보험’, ‘(무)우리WON어린이보험’

3. 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(미성년자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, 이하 같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.

(1)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(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, 이하 같다)가 출산한 경우(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하며,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)

(2)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중인 경우

나. ‘가. - (1)’의 경우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.

다. ‘가. - (2)’의 경우,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.

라. 육아휴직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공무

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.

마.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대상계약 당 1회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바. 계약자는 보험료 할인 신청시에 약관 제3조(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) 제6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사. ‘가’ 내지 ‘바’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다.

(1) 대상계약의 주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(갱신형 주계약의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)

(2) 이미 대상계약에 대해 이 특약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

(3) ‘가’ 의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
(다만, 변경 전 계약자가 변경 후 계약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

4. 보험료 할인 금액 및 기간에 관한 사항

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, 승인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에 해당하는 12개월분의 영업보험료를 할인한다. 할인 금액은 대상계약의 영업보험료에 1.0%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